2007구합31478, 제6행정부

2007. 9. 28.
부분영수

답 변 서

사 건 2007구합31478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 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2007. 9. 28.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황 상 현

tel: 02-6003-7104, fax: 02-6003-7016

e-mail: shhwang@hwawoo.com

2007. 09. 28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redacted]

exercise"로 수정되었는바, 이는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표현을 참조하여 한-미 FTA의 적용범위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을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한층 유리하게 되고, 표현상으로도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정된 부분입니다. FTA는 무역과 투자에 한정된 목적을 갖고 있는 통상조약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영역 규정은 한·미 FTA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나라의 국경이나 영토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이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역시 우리나라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권의 행사여부가 불분명하여 한국의 영토 고권에 대한 인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위 수정조항은 독도에 대한 영토고권에 관한 영토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며 오히려 FTA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하에 우리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정된 규정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토는 하나의 통상조약 상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러한 점은 이 사건 5. 25.자 공개협정문과 이 사건 협정문 서명본에서도 모두 분명히 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FTA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위 조항을 들어 국가 주권의 적용범위로 확대해석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논리비약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③ 필수 안보 예외 조항

第273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3 號
(臨時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年5月13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협상결과 관련)

審査된案件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협상결과 관련) 6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갈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웅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통합민주당 강창일 위원과 윤호중 위원, 최재천 위원, 김재윤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지난 6일 보임되었으나 아직 인사를 못하신 김종률 위원님과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인사 먼저 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17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라고 하는 중한 사안을 놓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 윤호중 위원입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김원웅 위원장님을 모시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7대 국회를 마감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 문제로 대단히 국민의 위협이, 근심이 높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FTA를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저는 원래 통외통위 위원입니다. 일부 신문이 갑자기 저를 배치한 것처럼 쓰시던데 대선 때 잠시 차출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몽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잠깐, 진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 위원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위원입니다.

다.

○최재천 위원 예.

그다음에 정태인 교수님,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교수님이 써 놓은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가 한미 FTA를 하는 목적이 단순한 통상이 아니라 미국식 법과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충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정태인 예, 외부쇼크에 의한 내부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그 같은 이야기를 2005년 가을경 부시 대통령이 정주 오셨을 때 그때 정상회담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외교 관계상 선례가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러거든요. 혹시 그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증인 정태인 그때 FTA 얘기를 꺼냈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들은……

○최재천 위원 그래서 점심 때 특별히 김현종 본부장이 배석을 했잖아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래서 그때 한미 간의 FTA가 사실상 '시작하자' 동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상의 과정은 모르십니까, 이야기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송기호 변호사나 여러 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5월 25일 공개본은 육지나 해양·상공은 '주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러니까 대륙붕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행사하는'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6월 30일 수정본에는 육지·해양·상공에 대해서는 '행사하는'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대륙붕 지역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는 전부 다 '행사하는', '행사되는' 해 가지고 그냥 엑서사이즈(exercise)로 돼 있어요. 왜 대륙붕 조항에 대해서만 한미 FTA가 굳이 '행사해도 되는' 이런 식의 영문을 사용했는지……

다만 정부가 딱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최경림 국장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북한 땅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둔 것이다."

그러면 제 생각은 북한 육지에 대해서는 이미 '행사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대륙붕에 대해서만 '행사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인지, '메이(may)'가 들어간 이유, 왜 행사해도 되는……

그러면 행사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지, 우리 대륙붕 지역 중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태인 이 부분은 송기호 변호사의 경우에는 '메이'가 들어간 것이 독도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뚜렷하게 다른 이유로, 아까 최경림 교섭관인가요? 남북통일이나 좌한 문제 때문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는지, 미국의 속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외교부에서, 분명히 미국이 요구한 이유가 있었고 넣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원래 의도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넣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외교부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위원 예, 그래요.

김종훈 증인, 5월 25일 공개본은 분명히 '엑서사이즈(exercise)'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은 '행사해도 되는'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연 미국이 먼저 요구했는지, 어떻게 수정하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혹시 미국에 대해서 일본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종훈 우선 뒤의 세 가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은 늘상 이런 말을 쓰니까 같이 쓰자고 미국이 먼저 제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측 판단은 '메이 엑서사이즈(may exercise)' 이러면, 영어로 '메이, 메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7/30/2008 WED 17:42 FAX 0234812103 suryunlaw office 006/006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may go or not. 나는 가도 좋고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메이에는 저 자신의 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붕에다 EEZ를,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메이 엑서사이즈' 하면 우리의 어떤 한계로서, 우리가 정하면 그것이 우리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최재천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파나마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법을 쓰기로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 엑서사이즈를 쓰는데 파나마는 그냥 엑서사이즈를 써요. 우리는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데 엑서사이즈만 쓰면요 국제적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엑서사이즈가 남이 인정을 해 주어야 행사되는 거지요. 그런데 메이가 들어가면 남이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겠다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요.

○최재천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증인 김종훈 우리는 그렇게 보고 미국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서로 그렇게 쓰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나 양해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회의록.

○증인 김종훈 저는 분명히 우리 대표단들에게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제가 여기서 지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왜 5월 25일에는 그냥 '메이'가 빠져 있다가 6월 30일 그때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텐데? 초기 조문인데, 이것은?

○증인 김종훈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고쳐진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판단해 모여서 논의해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 측의 재량을……

○위원장 김원웅 최재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김종훈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미국의 관보에 실린 새로운 내용을 알았느냐?'니까 '관보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네요.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더니 과도하게 흥분을 하시면서 '오히려 검역이 강화되었는데 국회의원들 공부나 좀 제대로 해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시더니 조금 전에 '언제 알았느냐?'고 하니까 '연휴기간에 알았다.'…… 아니, 지금 이미 사태가 나서…… 미국의 언론보도 잘못이라는 것이, 5월 10일이면 연휴 전인데 언론에서 나 있을 때도 아닌 그 이후에, 5월 10일에서 12일 연휴 때 아신 것을 가지고 관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에요, 오전에?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더 강화되었다는 논리를 한 번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다가 오늘 와서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로 '무슨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데 이것을 연휴에서야 확인하신 거예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관보에 나온 동물성 사료에 대한 이 내용을 연휴 때 아신 것이에요?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셨다고 답변하신 것이었어요, 증인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2005년 10월에 입법예고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요. 또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말썽이 났다 뭐 보도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말썽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한 것은 연휴 중에 알았습니다.

○최성 위원 아니,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김종훈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 정말 자료를 좀 봐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구나' 했더니 기껏 연휴 때 모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해서 모든 언론 내용에 나왔네요? '김종훈 증인은 사전에